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숙박세 과세 정지에 관한 공지사항

도쿄도에서는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모든 투숙객 여러분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숙박에 대한 숙박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도쿄도 내 호텔 및 여관에 숙박하셔도 숙박세를 결제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숙박세 과세 정지 기간	2020년 7월, 8월, 9월
대 상 자	도쿄도 내 호텔 및 여관에 숙박하시는 투숙객 여러분

<참고>

숙박세

도내의 여관 또는 호텔에 숙박하는 분에게 과세되는 법정 외 목적세로 2002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숙박세의 세수(稅收)는 국제도시 도쿄의 매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납세하실 분]

도내의 여관 또는 호텔에 숙박하는 분

[납세액]

숙박 일수

 ×

세율

○ 세율

숙박요금(1인 1박)	세율
10,000엔 이상 15,000엔 미만	100엔
15,000엔 이상	200엔

(주) 숙박요금이 1인 1박 10,000엔 미만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숙박요금이란】
식사요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숙박에 한정된 요금을 말합니다.

숙박요금에 포함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에 한정된 요금 •숙박에 한정된 요금에 부과되는 서비스료
숙박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 • 숙박 이외의 서비스에 상당하는 요금 (예) 식사, 회의실 이용, 전화 요금 등